

거창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권재경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2018 ~
----------	--------

발의일자	2018. 10. .
발 의 자	권재경 의원(인)

1. 제안이유

- 각종 범죄를 유발하는 요인을 없애기 위해 도시재생 사업과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시 그리는 벽화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그 근거를 마련 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범죄예방을 위한 벽화 조성 및 유지·관리사업을 신설함.(안 제8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9조, 제22조,
「거창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- 다. 합 의 : 기획감사실, 도시건축과
- 라. 기타사항
 - (1) 부패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 - (2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 - (3) 입법예고
 - (가) 예고기간 : 2018. . . ~ . . .
 - (나) 예고결과 :
 - (4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 - (5) 성별영향분석 : 해당사항 없음

거창군 조례 제 호

거창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(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사업)제5호를 제6호로 하며,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범죄예방을 위한 벽화 조성 및 유지·관리사업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8조(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사업)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.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산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 3.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도시환경 조성사업 4.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사업 5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<p style="text-align: right; margin-right: 20px;"><신 설></p>	<p>제8조(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사업)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</p> <p>1.~4.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color: blue; text-decoration: underline;">5. 범죄예방을 위한 벽화 조성 및 유지·관리사업</p> <p>6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</p>

● 관련법령 발췌

□ 지방자치법

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~ 3. (생략)

4.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·관리에 관한 사무

가. ~ 다. (생략)

마.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

사. ~ 거. (생략)

5. ~ 6. (생략)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□ 거창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군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”이란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·개선하는 것을 말한다.

2. “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기준”이란 군수가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의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것을 말한다.

제3조(기본원칙)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.

2.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, 울타리, 조경·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 통

제가 가능하도록 한다.

3.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.
4.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, 공원, 휴게시설,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.
5.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·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.

제4조(책무)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을 통해 안전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.

제5조(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) 군수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거창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다만,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「거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」 제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.

1.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
2.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
3.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6조(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에 대한 기준)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거창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.

제7조(우선 적용 범위)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1. 군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사업
2. 군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
3. 군의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
4. 그 밖에 군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, 각종 공공 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 등

제8조(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사업)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

2.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
3.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도시환경 조성사업
4.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사업
5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9조(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위원회의 설치)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 환경 조성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1.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
 2. 제6조에 따른 기준 마련 및 변경에 관한 사항
 3.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
 4.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
-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하여는 「거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」에 따른 거창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가 심의한다. 이 경우 거창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.

제10조(협력체계 구축)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내 경찰서 및 교육지원청 등 공공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제11조(홍보)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사업 우수사례 등을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.

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(제정 2017.11.29 조례 제2430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붙임 1**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[해당없음]**

- 「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」 제4조(비용추계 제외대상)제1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

붙임 2**입법예고 등 의견수렴 결과보고 요약서**

- 입법예고결과 요약서

의견제출자	제출의견	조치내용
	입법예고 예정	

붙임 3**부서 의견조회 결과 요약서**

- 부서 의견조회 결과 요약서

협의부서	협의내용	조치내용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획감사실 ○ 복지정책과 ○ 기획감사실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 ○ 성별영향분석평가 : 의견없음 ○ 규제심사 : 해당없음 	-